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770 발의연월일: 2023. 6. 20.

발 의 자:정점식·장동혁·유상범

조수진 · 김태호 · 김용판

이주화 · 임이자 · 박형수

전주혜 · 김도읍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토막살인·연쇄살인·강간살인미수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등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나,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개별법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대상범죄가 제한적이고 공개 대상자가 공소제기 이전 피의자에 한정되어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옴.

이에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

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강화를 통해 범죄 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특정중대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 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내란·외환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정의 규정 마련함(안 제2조).
- 다. 피의자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 및 공개 결정시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피의자 등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수사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 하여 벌칙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법률 제 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 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 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편제2장 외환의 죄
 - 2. 「형법」 제2편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범죄단 체 등의 조직)의 죄
 - 3. 「형법」 제2편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4.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의 죄
 -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 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2조(폭행치사상)(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마약류를 단순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 보관한 범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죄
-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에 해당하는 죄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12. 그 밖에 다중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범죄예방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제4조(피의자등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등의 얼굴, 성명 및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등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한정한다.)
- 2. 피의자등이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등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 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등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등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때 검사와 사 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등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등의 얼굴 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6조(비밀누설죄)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